

# 부천시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6월 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6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6년 6월 14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 □ 제안이유

- 평생학습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 위원 구성을 직능 중심으로 다양화 하고,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를 실무협의회로 변경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협의회 부위원장을 교육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 담당국장을 포함 하는 등 직능 중심으로 변경함.(안 제5조)
- 협의회 정기회의를 없애고, 안건 접수나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토로 함. (안 제7조)
-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평생

학습센터 소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실무협의회를 두고, 평생학습센터 업무관련 계획 수립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내지 제12조 신설)

- 평생학습센터는 부천시 관내에 두도록 함.(안 제14조)
-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 내지 제 24조 삭제)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없 음	○ 없 음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22호
의결 년월일	2006. 6. 16 (제127회)

제출년월일 : 2006. 6. 8

제 출 자 : 부천시장

## □ 제안이유

- 평생학습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 위원 구성을 직능 중심으로 다양화 하고, 평생학습센터운영 위원회를 실무협의회로 변경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협의회 부위원장을 교육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 담당국장을 포함하는 등 직능 중심으로 변경함.(안 제5조)
- 나. 협의회 정기회의를 없애고, 안건이 접수되거나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하도록 함.(안 제7조)
- 다.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평생학습센터 소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실무 협의회를 두고, 평생학습센터의 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 평생학습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 정보교류와 업무조정,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내지 제12조 신설)

라. 평생학습센터는 부천시 관내에 두도록 함.(안 제14조)

마.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  
내지 제24조 삭제)

## 부천시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평생학습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평생학습조례”를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로 한다.

제3조중 “평생교육법 제10조”를 “「평생교육법」 제9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협의회에서 호선한다.”를 “교육장이 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시 담당국장, 기관·단체의 장, 시의회 의원, 학계 및 관계전문가,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이 토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 되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3장(제8조 내지 제20조)을 제4장(제13조 내지 제25조)으로 한다.  
제3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장 평생학습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평생학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되며, 위원은 시소속 5급 공무원과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센터 업무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기관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평생학습센터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일비 등)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제13조(중전의 제8조)제1항중 “평생교육법 제4조”를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9조”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무소의 설치) 평생학습센터는 시 관내에 둔다.

제17조(중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운영요원) 평생학습센터에는 소장 및 직원을 포함 5인 이내를 둔다.

제18조(중전의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4조) 내지 제24조(중전의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자치행정과
입 안 자	담당과장	박한권
	담당팀장	신한선
	담당자	서현미(☎320-2188)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부천시평생학습조례</u></p> <p>제3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 <u>평생교육법 제10조의</u> 규정에 의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제5조(구성) ① (생략)</p> <p>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협의회에서 호선한다.</u></p> <p>③위원은 <u>교육장, 대학교총(학)장,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상공회의소회장, 노동사무소장, 평생교육관련 단체장 등</u> 각계 각층의 인사 중에서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④ (생략)</p> <p>&lt;신 설&gt;</p> <p>제7조(회의 등) ①<u>협의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u>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천시 평생학습 조례</u></p> <p>제3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 「<u>평생교육법</u>」 제9조----- ----- -----</p> <p>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교육장이 된다.</u></p> <p>③위원은 <u>평생학습과</u> 관련되는 시 담당국장, 기관·단체의 장, 시의회 의원, 학계 및 관계전문가,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u>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u>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된다.</p> <p>제7조(회의 등) ①<u>협의회는</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1. 시장이 토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 되었을 때</p>

현 행	개 정 안
<p>②·③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p> <p>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평생학습실무협의회</u></p> <p><u>제8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평생학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p> <p><u>②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되며, 위원은 시소속 5급 공무원과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u></p> <p><u>④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9조(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생학습센터 업무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 평생학습기관의 프로그램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li> <li>3. 평생학습기관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li> <li>4. 평생학습센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li> <li>5.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lt;신 설&gt;</p>	<p>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lt;신 설&gt;</p>	<p>제11조(회의) ①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p> <p>②실무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lt;신 설&gt;</p>	<p>제12조(일비 등)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부천시평생학습센터</u></p> <p><u>제8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u>평생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부천시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생략)</p> <p><u>제9조(사무소의 설치) 평생학습센터의 사무소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번지에 둔다.</u></p> <p><u>제10조(기능) (생략)</u></p> <p><u>제11조(운영) (생략)</u></p> <p><u>제12조(조직원 구성 등) ①</u>평생학습센터에는 소장 및 직원을 포함 5명이내를 둔다.</p> <p>②소장은 평생학습센터를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u>제13조(자격기준) 평생학습센터 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부천시평생학습센터</u></p> <p><u>제13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u>시장은 「평생교육법」 제9조-----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4조(사무소의 설치) 평생학습센터는 시 관내에 둔다.</u></p> <p><u>제15조(기능) (종전의 제10조와 같음)</u></p> <p><u>제16조(운영) (종전의 제11조와 같음)</u></p> <p><u>제17조(운영요원) 평생학습센터에는 소장 및 직원을 포함 5인 이내를 둔다.</u></p> <p><u>제18조(자격기준) ----- ----- ----- ----- -----</u></p> <p><u>각 호의 어느 하나와-----</u></p>



현 행	개 정 안
<p>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 평생학습기관과의 프로그램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li> <li>3. 평생학습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li> </ol>	
<p>제16조(회의 등) ①운영위원회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p> <p>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제17조(임기)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18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 등의 직무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lt;삭 제&gt;</p>
<p>제19조(감독) ①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p>제20조(시행규칙) (생략)</p>	<p>제25조(시행규칙) (종전의 제20조와 같음)</p>